



뉴욕시(THE CITY OF NEW YORK)
주택 보존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집행 및 근린 서비스실(OFFICE OF ENFORCEMENT AND NEIGHBORHOOD SERVICES) 규정 집행부(DIVISION OF CODE ENFORCEMENT)

기록 제출 명령

관리 사무실/ 소유주 귀하

귀하는 주택 보존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HPD)에 (각 기록 제출 명령서에 표기된 일자) 당일까지 2003 뉴욕시 아동 납중독방지법(2004년 수정 지방법 1)과 뉴욕시 법률 타이틀 28 제11장(28 RCNY 제11장)에 따라 보관하도록 요구되는 (각 기록 제출 명령서에 표기된 주소)에 대한 **2010년부터 현재까지**의 기록 사본을 제출하라는 명령이 발부되었습니다.

이 기록 제출 명령은 보건정신위생국(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 국장의 저감 명령(COMMISSIONER'S ORDER TO ABATE, COTA) 또는 서류 감사에 따른 것입니다(적용된 규정을 확인하려면 본인이 수신한 기록 제출 명령서를 참조하세요).

귀하는 모든 확인서와 제출하는 기록을 증빙하는 자료 사본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양식의 사본과 제출하는 모든 증거자료와 기록을 보관해두십시오. 기록은 아래 주소로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94 Old Broadway, 7th Floor
New York, NY 10027
Attn: COTA/Record Audit Unit

이 기록 제출 명령에 대한 질문은 HPD의 COTA/서류 감사팀(Record Audit Unit), 전화 (212) 863-5806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록 제출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반서가 발부되고, 행정법 § 27-2056.4에 따른 \$1,500 이하의 민사상 벌금과 § 27-2056.17 위반에 대한 \$1,000 이상 \$5,000 이하의 벌금 및 § 27-2056.7 위반에 대한 \$1,000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귀하는 또한 납성분 페인트 위험물 의무 사항 불이행에 대해 민사상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규 소유주 안내

의무 감사 기간 내에 있는 건물을 구입하였고 필수 보관 서류를 전 소유주에게 전달받지 못했다면, 귀하의 실제 소유 기간에 해당하는 필수 서류와 추가 증거 서류를 소유 권리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 완료하여 공증을 받은 전 소유주 기록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십시오(이 명령서에 동봉).

작성 안내

아래 각 난에는, 감사 기간의 각 연도 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설명이 없는 경우, 모든 서류가 각 항목 별로 요구됩니다.

주의 사항: 2020년 1월 1일자로, “거주”라는 용어는, 6세 미만의 아동이 1960년 이전에 건축된 주거시설에서 살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이 이러한 주거시설에서 주당 10시간 이상 정규적으로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1절: 연례 공지서 배부 및 점검에 대한 감사

1.1 각 주거시설 입주자에 대한 연례 공지서 전달 증빙

- a. 작성 완료하여 공증을 받은 연례 공지서 전달 확인서(이 명령서에 동봉)와 전달된 연례 공지서 예시 1부.
- b. 건물 주소, 각 세대 호수와 각 세대에 전달한 날짜 또는 각 세대에 이메일 공지를 보낸 일자의 전체 목록.

아래 “C” 항목은 해당 거주 시설 중 어느 한 곳이 아래 단락에서 제시한 조항에 의하여 행정법 §27-2056.5(a)조항에서 규정한 납성분 페인트 가정에서 면제되는 경우에만 요구됩니다.

- c. 해당 주거 시설에 대하여 HPD가 발급한, 감사 기간 중 유효한 납 예외 조항이 적용되는 건물에 있는 모든 주거시설 유닛 목록, 그리고 조합 주택 또는 콘도미니엄 주거 시설로서 해당 기간 동안 소유주가 이러한 조합된 거주자에게 연례 공지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모든 조합 거주 유닛의 목록. 위의 모든 목록에는 반드시 소유주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1.2 각 세대 입주자로부터 수신한 연례 공지 답장

- a. 각 세대 별 답변 여부 및 입주자의 구두 또는 서면 답변 또는 소유주의 점검/인지에 근거하여 해당 유닛에 6세 미만 아동 거주 여부를 포함한 답변 목록.
- b. 수신한 경우, 작성하여 회송된 연례 공지 사본. 각 서류에는 건물 주소, 유닛 번호, 입주자 이름, 서명 및 일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래 “C” 항목은 해당 거주 시설 중 어느 한 유닛이 연례 공지에 회신하지 않은 경우에만 요구됩니다.

- c. 6세 미만 아동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문 시도 일자 또는 6세 미만 아동이 유닛에 거주함을 소유주가 인지한다는 표시; 내용 증명 또는 등기 우편으로 서면 공지를 제공했다는 증거 또는 유닛 접근 필요성을 우편 발송했다는 퍼스트 클래스 메일 확인증; 소유주가 특정 거주 유닛 접근 실패를 보건정신위생국에 알린 통지서 사본.

2020년 1월 1일자로, “거주”라는 용어는, 6세 미만의 아동이 1960년 이전에 건축된 주거시설에서 살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이 이러한 주거시설에서 주당 10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1.3 연례 공지서에 대한 입주자 답변에 따라 시행된 연례 점검 보고서

- a. 작성 완료하여 공증을 받은 납성분 페인트 위험 연례 점검 확인서 (이 명령서에 동봉).
- b. 모든 육안 검사 항목에 대해 벗겨진 페인트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서 또는 유사한 서류를 포함하여 검사를 실행한 주거 유닛에 대한 점검 보고서 사본.

아래 “C”와 “D” 항목은 진입을 하지 못한 유닛이 있는 경우에만 요구됩니다.

- c. 작성 완료하여 공증을 받은 납성분 페인트 위험 연례 점검을 위한 진입 실패 확인서(이 명령서에 동봉)

- d. 입주자에게 세대 진입 필요성을 알리는, 입주자에게 제공된 서면 공지서 또는 유사한 문서, 그리고 진입 시도 및 진입 실패 이유에 대한 기록 사본.

제2절: 납성분 페인트 위험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수행된 작업에 대한 감사

2.1 감사 기간 현재 진행 중이며 미확인된 위반의 경우

- 감사 기간 동안 현재 진행 중이며 미확인된 위반 여부를 알아보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HPD의 COTA/서류 감사팀, 전화 (212) 863-5806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HPD 감사 기간 현재, 진행 중이며 미확인된 납성분 페인트 위험 위반이 없는 경우, 제2절에 관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없습니다.

소유주는 현재 진행 중이며 미확인된 납성분 페인트 위험 위반 사항에 대하여 다음 모든 항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성 완료하여 공증을 받은 AF-5 확인서. (이 서류는 <https://www1.nyc.gov/site/hpd/services-and-information/lead-based-paint.page>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 EPA 인증 저감 업체의 공식 대리인 또는 주택관리법 14조 §27-2056.11항 및 28 RCNY §11-06에 따라 납성분 페인트 위험 위반을 시정하는 작업이 수행되었다고 진술하는 작업을 수행한 개인의 확인서; 작업 개시일 및 완료일; 작업을 완료한 EPA 업체에 대한 주소 및 연락처(전화 또는 팩스 번호) (견본 문서는 <https://www1.nyc.gov/site/hpd/services-and-information/lead-based-paint.page>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 납성분 페인트 위험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작업을 수행한 저감 업체에 대한 EPA 인증서 1부.
- 샘플의 준비 및 분석 방법을 나타내는 모든 표면 먼지 샘플에 대한 주정부 인증 실험실 보고서 1부.
- 샘플 채집 일자를 확인하고 샘플이 채집된 주소/세대 호수를 나타내는, 표면 먼지 샘플 채집인의 확인서
(견본 문서는 <https://www1.nyc.gov/site/hpd/services-and-information/lead-based-paint.page>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표면 먼지를 채집한 자의 교육 확인서 1부. 교육 확인서는 반드시 먼지 채집일 당시 유효해야 합니다.

제3절: 납성분 페인트 또는 미확인 납성분 페인트 교란 비위반 작업에 대한 감사

3.1 6세 미만 아동이 거주하는 세대 내 침실 당 2스퀘어피트 이상의 방 또는 건물의 공용 공간 내 표면에 대한 납성분 페인트 또는 미확인 납성분 페인트 교란 비위반 작업 기록(적용된 작업 방법 기록 포함).

2020년 1월 1일자로, “거주”라는 용어는, 6세 미만의 아동이 1960년 이전에 건축된 주거시설에서 살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이 이러한 주거시설에서 주당 10시간 이상 정규적으로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 “A” 항목은 수리 당시 6세 미만 아동이 거주하는 세대 내 비위반 표면 페인트 작업이 감사 기간 중 완료된 작업이 없는 경우에만 요구됩니다.

- a. 작성 완료하여 공증을 받은 납성분 페인트 또는 미확인 납성분 페인트 교란 작업 없음 확인서(비위반)(이 명령서에 동봉)

또는 그러한 작업이 수행된 경우:

소유주는 작업이 수행된 곳의 목록과 작업 수행지별로 다음의 모든 항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b. EPS 인증 개조 공사 업체의 공식 대리인 또는 주택관리법 14조 §27-2056.11항 및 28 RCNY §11-06에 따라 납성분 페인트 위험 위반을 시정하는 작업이 수행되었다고 진술하는 작업을 수행한 개인의 확인서; 작업 개시일 및 완료일; 작업을 완료한 EPA 업체에 대한 주소 및 연락처(전화 또는 팩스 번호)
(견본 문서는 <https://www1.nyc.gov/site/hpd/services-and-information/lead-based-paint.page>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c. 작업을 수행한 업체에 대한 EPA 인증서 1부.
- d. 작업을 수행한 EPA 인증 개조 공사자 또는 저감 공사자와 감독자의 EPA 인증서 사본.
- e. 작업 기술서 및 세대 내 교체된 자재 또는 해당 작업의 청구서 등 각 방에 수행된 작업의 위치.
- f. 샘플의 준비 및 분석 방법을 나타내는 모든 표면 먼지 샘플에 대한 주정부 인증 실험실 보고서 1부.
- g. 샘플 채집 일자를 확인하고 샘플이 채집된 주소/세대 호수를 나타내는, 표면 먼지 샘플 채집인의 확인서
(견본 문서는 <https://www1.nyc.gov/site/hpd/services-and-information/lead-based-paint.page>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 h. 표면 먼지를 채집한 자의 교육 확인서 1부. 교육 확인서는 반드시 먼지 채집일 당시 유효해야 합니다.

아래 “I” 항목은 입주자가 해당 세대에서 재배치되지 않고 작업이 하루 이상 계속된 경우에만 요구됩니다.

- i. 그날 작업이 끝난 뒤 마감시간에 입주자가 작업 공간에 임시 접근을 허가받을 때 작성한 체크리스트.

아래 “J”와 “K” 항목은 수행된 작업이 6세 미만 아동이 거주하는 세대 내 방 내부의 납성분 페인트 또는 미확인 납성분 페인트 100 스퀘어피트 이상을 교란하였거나 그러한 세대 내 두 개 이상의 창문 제거를 포함하였을 경우에만 요구됩니다.

- j. 소유주가 작성하여 서명한 뒤 보건정신위생국에 제출한 작업 개시 공지문 1부.
- k. 작업 개시 이전에 보건정신위생국에 제출한 통지서 내용의 모든 변경 사항, 또는 작업이 이미 개시된 경우, 그러한 변경의 24시간 이내.

주의 사항: 2020년 1월 1일자로, “거주”라는 용어는, 6세 미만의 아동이 1960년 이전에 건축된 주거시설에서 살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이 이러한 주거시설에서 주당 10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4절: 모든 거주 세대 입주자 교체 시 수행된 작업 감사

전체에 해당하는 요구 사항:

- a.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 뒤 감사 기간에 신규 세입자가 다시 입주한 모든 세대가 열거된, 작성 완료하여 공증 받은 모든 거주 세대 입주자 교체 확인서(이 명령서에 동봉)

아래 “B” 항목은 세대 세입자 전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는 작업이 없는 경우에만 요구됩니다.

b. 작성 완료하여 공증을 받은 **입주자 교체 시 작업 불필요 확인서** (이 명령서에 동봉).

아래 “C” 항목부터 “I”까지의 항목은 다음을 포함하여 작업이 입주자 교체 시 요건을 준수하여 완료된 경우에만 요구됩니다 - 납성분 페인트 위험 또는 추정된 납성분 페인트 위험 처리; 모든 문과 문틀의 마찰 표면에 납성분 페인트 제거; 창문의 모든 마찰 표면에 납성분 페인트 제거 또는 교체 창문틀 설치 준비; 그리고 벗겨진 바닥, 창턱, 창문 앞 공간을 매끄럽고 청소하기 편리하도록 하는 작업.

- c. 해당 작업이 주택관리법 제14조 §27-2056.11(a)(3) 및 28 RCNY§11-06에 따라 수행되었다고 진술하는, EPA 인증 저감 업체 또는 개조 공사 업체의 공인 대리인 또는 작업 수행자의 확인서; 작업 개시일 및 완료일; 작업을 완료한 EPA 업체에 대한 주소 및 연락처(전화 또는 팩스 번호) (견본 서류는 <https://www1.nyc.gov/site/hpd/services-and-information/lead-based-paint.page>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 d. 해당하는 경우 저감 업체 또는 작업을 수행한 개조 공사 업체의 EPA 인증서 사본.
- e. 해당하는 경우 EPA 인증 저감 작업자 및 감독자 또는 작업을 수행한 개조 업체의 EPA 인증서 사본.
- f. 작업 기술서 및 세대 내 교체된 자재 또는 해당 작업의 청구서 등 각 방에 수행된 작업의 위치.
- g. 샘플의 준비 및 분석 방법을 나타내는 모든 표면 먼지 샘플에 대한 주정부 인증 실험실 보고서 1부.
- h. 샘플 채집 일자를 확인하고 샘플이 채집된 주소/세대 호수를 나타내는, 표면 먼지 샘플 채집인의 확인서(견본 문서는 <https://www1.nyc.gov/site/hpd/services-and-information/lead-based-paint.page>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 i. 표면 먼지를 채집한 자의 교육 확인서 1부. 교육 확인서는 반드시 먼지 채집일 당시 유효해야 합니다.

제5절: 5년 검사 요건 감사.

2020년 지방법 31은 건물 소유자들이 1960년 1월 1일 이전에 건축된 임대용 주거 건물에 대하여 2025년 8월 9일까지 공인 공사업체(Contractor)를 사용하여 납성분 페인트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단, 6세 미만 아동이 2020년 8월 9일 이후에 세대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 입주 1년 이내에(또는 기한일 중에 먼저 도래하는 일자까지) 감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6세 미만의 아동이 세대에서 살거나, 이 아동이 이러한 주거시설에서 주당 10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머무를 때 주거한다고 간주합니다. 납성분 페인트 연례 공시 절차의 일환으로, 소유주는 최소 매년 아동에 대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 검사는 (i) 소유주나 소유주의 대리인이나 납성분 페인트 위험 처리에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도록 고용된 어떠한 공사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ii) 연방법 타이틀 40, 745.226절에 따른 검사자 또는 위험 사정사로 공인된 자가 수행하여야 합니다.

전체에 해당하는 요구 사항:

5.1 납성분 페인트 테스트 준수 확인서(이 명령서에 동봉)

5.2 EPA 공인 검사원 또는 위험사정관이 수행한 납 검사 보고서로서 납성분 페인트에 양성 또는 음성 결과를 받은 표면 또는 부분.

5.3 위의 5.2항목을 제출하는 경우, 검사를 수행하고 검사 보고서를 작성한 공인 검사원 또는 위험사정관에 대한 EPA 인증서 1부 그리고, 2020년 8월 9일 이후에 검사를 받는 경우, 해당 검사원 또는 위험 사정관이 작성한 확인서(이 명령서에 동봉).



전 소유주 납성분 페인트 기록 확인서

본인, _____ (이름을 정자로 기입)은/는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다음과 같이 맹세 또는 확인합니다.

본인은 _____ (주소)에 위치한 건물(“대상 부동산”)의 소유주/관리인입니다.

본인/회사 _____ (이름/회사명을 정자로 기입)이/가 대상 부동산을 구입한 일자 는 _____ (일자)입니다. 대상 부동산의 권리 증서 사본을 첨부하였습니다.

대상 부동산이 2003 뉴욕시 아동 납중독 방지법(2004년 수정 지방법 1)의 준수 대상으로, 특정 기록이 행정법 27-2056.4 및 27-2056.17 조항에 따라 최소 10년 동안 보관되며, 그러한 기록이 새 소유주에게 전달되도록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함:

- 전 소유주로부터 납중독 방지법 준수와 관련된 어떠한 기록도 받지 못했습니다.

또는

- 본 감사일로부터 본인의 대상 부동산 매입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납중독 방지법 준수 관련 기록을 전 소유주로부터 첨부한 것만 받았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다음을 위한 것입니다(해당 사항에 모두 체크하십시오).

- 연례 공지 전달 증빙 □ 납성분 페인트 또는 미 확인 납성분 페인트 교란 비위반 작업
- 연례 공지 답변 수신 □ 입주자 교체 시 수행된 작업
- 연례 점검 수행

(이름을 정자로 기입)

(서명)

뉴욕 주, _____ 카운티

직인

20____년 _____월 _____일 본인 앞에서 맹세함

(공증인 서명)

연례 공지 전달 확인서 -
우편 / 이메일 / 직접 전달

본인, _____ (이름을 정자로 기입)은/는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다음과 같이 맹세 또는 확인합니다.

아동에 관한 납성분 페인트 위험 설문에 대한 연례 공지(“연례 공지”) 전달은 행정법 27-2056.4호 조항에 따라 _____ 에 위치한 건물(“대상 부동산”)에 있는 모든 주거 유닛에 전달되고 감사 기간 동안 다음 사람에게 의해 작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해당 사항에 선택하십시오.

- 본인, 소유주/관리인
- 본인 지도 하에 있는 직원
- 본인 또는 본인의 지도 하에 있는 직원이 고용한 제3자

감사 기간 동안 “대상 부동산”에 위치한 건물 내 모든 세대에 연례 공지서를 전달하는 절차는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세대 입주자에게 이메일 또는 우편 또는 직접 전달되었거나 이메일, 우편, 직접 전달을 혼용한 방법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본인은 이 확인서에 대한 증빙으로, 감사 기간의 각 연도별로 본인이 보유한 다음 기록을 첨부합니다:

- 건물 입주자들에게 우편/이메일/직접 전달된 영문 및 스페인어 연례 공지서의 샘플 사본
- 건물 주소, 각 거주 세대 호수, 각 세대에 전달된 일자, 또는 각 세대에 이메일 공지가 전달된 일자, 그리고 각 세대에 전달을 수행한 개인의 이름, 그리고
- 제3자에 의해 전달될 경우, 회사의 이름과 주소

(회사명)

(서명)

뉴욕 주, _____ 카운티

직인

20____년 _____월 _____일 본인 앞에서 맹세함

(공증인 서명)

납성분 페인트 위험에 대한 연례 점검 확인서

본인, _____(이름을 정자로 기입)은/는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다음과 같이 맹세 또는 확인합니다. 본인은 _____ (주소)에 위치한 건물(“대상 부동산”)의 소유주/관리인입니다.

본인 또는 본인의 직원, 또는 이 목적으로 본인이 고용한 개인은 행정법 27-2056.4 조항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6세 미만의 아동이 거주하는 세대와 6세 미만의 아동이 거주하는 건물의 공동 구역에서 납성분 페인트 위험에 대해 육안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인은 이 확인서에 대한 증빙으로, 본인이 보유한 기록 중 다음을 반영하는 감사 기간 연도별 기록을 모두 첨부합니다.

- 육안 검사를 실시한 사람의 이름, 검사 일, 세대 호수, 각 세대별 검사 결과 사본을 포함하여 검사를 수행한 세대 정보.

_____(이름을 정자로 기입) _____(서명)

뉴욕 주, _____카운티 _____직인

20____년____월____일 본인 앞에서 맹세함

_____(공증인 서명)

납성분 페인트 위험 연례 점검을 위한 진입의 실패 확인서

본인, _____(이름을 정자로 기입)은/는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다음과 같이 맹세 또는 확인합니다.

본인은, _____ (주소)에 위치한 건물(“대상 부동산”)의 소유주/관리인입니다.

본인 또는 본인의 직원 또는 본인이 이 목적으로 고용한 개인이 행정법 27-2056.4에 의거하여 매년 검사를 받도록 요구되는 6세 미만 아동 거주 세대에서 납성분 페인트 위험에 대한 육안 점검을 수행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점검을 위한 진입 필요성에 대해 세대 입주자에게 서면 공지를 보내어 진입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점검을 위한 진입 실패로 인하여 특정 세대에서 육안 검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본인은 이 확인서에 대한 증빙으로, 본인이 보유한 기록 중 다음을 반영하는 감사 기간 연도별 기록을 모두 첨부합니다.

- 육안 검사가 요구될 수 있지만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세대 및 그러한 각 세대에 대해:
 - 우편 증명 또는 유사한 기록이 있는 우편 발송일을 포함하여, 점검을 위한 세대 진입 필요성에 관해 해당 세대의 입주자들에게 내용 증명 또는 등기 우편이나 퍼스트클래스 메일로 제공된 서면 공지 사본들
 - 진입이 시도된 일자
 - 점검이 미실시된 이유(예, 납성분 페인트 위험에 관한 연례 공지에 무답변, 접근 거부, 점검을 위한 접근 필요성에 대한 소유주의 공지에 무답변).

(이름을 정자로 기입)

(서명)

뉴욕 주, _____ 카운티

직인

20_____년 _____월 _____일 본인 앞에서 맹세함

(공증인 서명)

납성분 페인트 또는 미확인 납성분 페인트 교란 작업 없음 확인서(비위반)

본인, _____ (이름을 정자로 기입)은/는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다음과 같이 맹세 또는 확인합니다.

본인은 _____ (주소)에 위치한 건물(“대상 부동산”)의 소유주/관리인이며, 본인은 감사 기간 동안 대상 부동산에서 6세 미만 아동이 거주한 시점에 해당 건물의 어떠한 방에서도 납성분 페인트 또는 미확인 납성분 페인트의 도포 면적에 대해 2스퀘어피트 이상 교란하는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직원이나 도급 업체에 작업을 하도록 시킨 적도 없습니다.

본인이 소유주/관리인일 당시 감사 기간 동안 작업이 수행된 모든 세대를 아래에 열거하였으며, 이 작업이 납성분 페인트를 교란시키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근거를 표시하였습니다.

세대 호수	아래 이유 중 선택하십시오(X).			
	HPD 납성분 페인트 금지에 면제 대상임	EPA 공인 검사원 또는 위험사정인이 검사한 결과 납성분 페인트가 검출된 페인트 표면이 없었음.*	당시 세대에 거주하는 6세 미만 아동이 없었음.	수행된 작업이 공간 내 납성분 페인트 또는 미확인 납성분 페인트 도포 면적의 2 스퀘어피트 이상을 교란하지 않았음.

*납성분 페인트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온 세대인 경우, 다음 구비 서류를 첨부합니다.

- EPA 공인 검사원 또는 위험사정인이 작성한 검사 보고서 사본 1부.
- 검사일 당시 유효한 검사원 또는 위험사정인의 EPA 인증서 사본.
- 검사를 수행한 검사원 또는 위험사정인의 공증된 확인서. (이 명령서에 동봉된 확인서).

세대를 전부 나열하기 위해 추가 공간이 필요한 경우 이 확인서의 매수를 추가하십시오.

(이름을 정자로 기입)

(서명)

뉴욕 주, _____ 카운티

직인

20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본인 앞에서 맹세함

(공증인 서명)

모든 거주 세대 입주자 교체 확인서

본인, _____(이름을 정자로 기입)은/는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다음과 같이 맹세 또는 확인합니다.

본인은 _____
(주소)에 위치한 건물(“대상 부동산”)의 소유주/관리인이며,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함:

본인이 소유주/관리인일 당시 감사 기간 중 기존 세입자 전출 후 신규 세입자가 전입한 세대(입주자 교체)가 없었습니다.

또는

본인이 소유/관리인일 당시 감사 기간 중 다음 세대의 기존 세입자가 전출 후 신규 세입자가 전입(입주자 교체)하였습니다.

세대 호수	기존 세입자 전출일	신규 세입자 전입일

세대를 전부 나열하기 위해 추가 공간이 필요한 경우 이 확인서의 매수를 추가하십시오.

입주자 교체가 있었던 모든 세대에 대하여, 작업 요건 준수 여부를 보여주기 위해 소유주/관리인은 기록 제출 명령서의 제4장 “c”에서 “i”까지에 있는 모든 정보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주자 교체가 있었지만 교체 시 작업이 필요 없었던 모든 세대에 대하여, 소유주/관리인은 **입주자 교체 시 작업 불필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름을 정자로 기입) (서명)

뉴욕 주, _____ 카운티 직인

20_____년 _____월 _____일 본인 앞에서 맹세함

(공증인 서명)

입주자 교체 시 작업 불필요 확인서

본인, _____ (이름을 정자로 기입)은/는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다음과 같이 맹세 또는 확인합니다.

본인은 _____ (주소)에 위치한 건물(“대상 부동산”)의 소유주/관리인이며, 다음 주거 세대는 본인이 소유주/관리인일 당시 감사 기간 중 기존 세입자 전출 및 신규 세입자 전입(입주자 교체)이 있었지만 행정법 27-2056.8 조항에 따른 입주자 교체 시 작업이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세대를 아래에 열거하였으며, 이 세대에 입주자 교체 시 작업이 요구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근거를 표시하였습니다.

세대 호수	아래 이유 중 선택하십시오(X).			
	HPD 납성분 페인트 금지에 면제 대상임	세대에는 페인트칠 된 창문 및 문 마찰 표면이 없으며, 바닥과 창턱, 창문 앞 공간은 매끄럽고 청소하기 편리하며, 시정해야 하는 납성분 페인트 위험 또는 근본적인 결함이 없었습니다.	세대 창문 및 문 마찰 표면은 납성분 페인트 검사 결과 음성이었으며*, 바닥과 창턱, 창문 앞 공간은 매끄럽고 청소하기 편리하였으며, 시정해야 하는 납성분 페인트 위험 또는 근본적인 결함이 없었습니다.	EPA 공인 검사원 또는 위험사정인이 납성분 페인트를 검사한 결과 음성이었으며, 납성분 페인트가 검출된 표면이 없었습니다*.

*납성분 페인트 시험 결과, 창문 또는 문 마찰 표면에서 납성분 페인트가 검출되지 않았거나(위 3열) 페인트칠 된 표면 중 납성분 페인트가 검출된 표면이 없었다면(위 4열), 다음 구비 서류를 첨부합니다.

- EPA 공인 검사원 또는 위험사정인이 작성한 검사 보고서 사본 1 부.
- 검사일 당시 유효한 검사원 또는 위험사정인의 EPA 인증서 사본.
- 검사를 수행한 검사원 또는 위험사정인의 공증된 확인서. (이 명령서에 동봉된 확인서).

세대를 전부 나열하기 위해 추가 공간이 필요한 경우 이 확인서의 매수를 추가하십시오.

(이름을 정자로 기입)

(서명)

뉴욕 주, _____ 카운티

직인

20____년 _____월 _____일 본인 앞에서 맹세함

(공증인 서명)

납성분 페인트 XRF 검사 준수 여부 확인서

본인, _____ (이름을 정자로 기입)은/는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다음과 같이 맹세 또는 확인합니다.

본인은 _____ (주소)에 위치한 건물(“대상 부동산”)의 소유주/관리인이며, 행정법 제27-2056.4 a-1 조항의 납성분 페인트 검사 요건 준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하며 서류를 제출합니다.

파트 A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2020년 8월 9일 이후, 대상 부동산의 주거 유닛에서 6세 미만 아동이 입주하여 살거나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머문 적이(“거주한 적이”) 없습니다.

또는

네, 2020년 8월 9일 이후, 대상 부동산의 주거 유닛에서 6세 미만 아동이 입주하여 살거나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머문 적이(“거주한 적이”) 있으며, 다음 정보가 담긴 문서를 첨부합니다.

세대 호수	아동 입주일	해당 세대는 납성분 페인트 검사를 받았습니까? (네 또는 아니요)	검사일
-------	--------	--------------------------------------	-----

파트 B 상기 **파트 A**에서 열거/첨부한 세대 이외에 건물 내 다른 유닛에 대하여, 세입자 거주용 모든 임대 유닛은 2025년 8월 9일 이전까지 XRF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함을 이해하며,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금일 현재 대상 부동산에서 납성분 페인트에 대해 XRF 검사를 받은 다른 주거 유닛은 없습니다.

또는

대상 부동산의 다른 주거 유닛이 XRF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를 받은 유닛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가 담긴 서류를 제출합니다.

세대 호수	검사일
-------	-----

파트 C 파트 A 또는 파트 B에서 열거한 XRF 검사가 수행된 모든 세대에 대하여, 검사 요건 준수 여부를 보여주기 위하여 본인은 또한 다음의 기록을 제출합니다.

- 모든 납 검사 보고서 사본으로, 납성분 페인트 양성 및 음성 결과 표면 포함
- 검사일 당시 유효한 검사를 수행한 각 검사원 또는 위험사정인의 EPA 인증서 사본
- 2020년 8월 9일 이후에 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를 수행한 검사원 또는 위험사정인의 공증된 확인서(이 명령서에 동봉된 확인서).

(이름을 정자로 기입) _____

(서명) _____

뉴욕 주, _____ 카운티

직인

20____년 _____월 _____일 본인 앞에서 맹세함

(공증인 서명) _____

납성분 페인트 검사를 수행한

공인된 개인의 확인서

(이 기록 제출 명령서에서 요구되는 경우에만 제출)

본인, _____ (정자체 이름)은(는), 아래 주소에 소재한 건물 내에서 납성분 페인트에 대한 검사와 시험 및/또는 샘플링을 수행하였습니다. _____ (거리), _____ (시), _____ (주), _____ (우편번호), _____ (해당 경우, 세대 호수) _____ (날짜).

저는 연방 규정 타이틀 40의 파트 745, 서브파트 L과 Q에 의거하여 위의 검사와 시험 및/또는 샘플링을 수행하였습니다. 저는 주택에서 납성분 페인트의 유해성 평가 및 관리에 대한 미주택도시개발국 지침 제2판(2012년 7월)의 타이틀 40 CFR § 745.227 및 제7장에 따라 검사와 시험 및/또는 샘플링을 수행하였습니다.

본인은 (하나에 체크):

_____ 자영업자

_____ EPA 인증 업체에 고용됨(이름): _____ 및 해당 업체의 EPA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이 확인서에 저의 EPA 인증서 사본을 첨부했습니다. 저의 EPA 인증서 번호는 _____ 이며, 유효기한은 _____ 입니다.

(정자체 이름)

(서명)

뉴욕 주, _____ 카운티

공증 직인

20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본인 앞에서 맹세함

(공증인 정자체 이름)

(공증인 서명)

